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963호
2024. 3. 26.(화)



목 차

◆ 자치법규 등

[조 례]

제9121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3
제9122호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
제9123호	서울특별시회의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
제9124호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8
제9125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9
제9126호	서울특별시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	13
제9127호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5
제9128호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16
제9129호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7
제9130호	서울특별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에 관한 조례	19
제9131호	서울특별시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2
제9132호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5
제9133호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6
제9134호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7
제9135호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8
제9136호	서울특별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30
제9137호	서울특별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32
제9138호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34
제9139호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5
제9140호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39
제9141호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41
제9142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3
제9143호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5
제9144호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6
제9145호	서울특별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	47
제9146호	서울특별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	48
제9147호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0

제9148호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52
제9149호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5
제9150호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7
제9151호	서울특별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59
제9152호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2
제9153호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5
제9154호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6
제9155호	서울특별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67
제9156호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69
제9157호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70
제9158호	서울특별시 위기가구 지역사회 발굴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72
제9159호	서울특별시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75
제9160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8
제9161호	서울특별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80
제9162호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82
제9163호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3
제9164호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8
제9165호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90
제9166호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92

◆ 서울특별시교육청

[입법예고]

제2024-147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94
------------	---	----

자치법규 등**[조 례]****◆ 서울특별시조례 제9121호****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대비하기위한” 을 “대비하기 위한”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범위 안” 을 “범위” 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이하 “출장공무원” ” 을 “이하 “출장공무원” ” 으로 한다.

제11조 중 “15일 범위 안” 을 “15일의 범위” 로 한다.

제13조제2항 단서 중 “범위 안” 을 “범위” 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 안” 을 각각 “범위” 로 한다.

제24조제5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중 “제5항” 을 “제6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중전의 제14항) 중 “제13항” 을 “제14항” 으로 하며, 같은 조 제17항 및 제18항을 각각 제16항 및 제17항으로 한다.

⑤ 6세 이상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준비, 학교 적응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교육지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제26조 중 “범위 안” 을 “범위”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초등학교 입학기 및 적응기인 6세 이상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경력단절 없이 일하면서 탄력적으로 자녀지도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 신설

2. 주요내용

- 가. 6세 이상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교육지도시간(특별휴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제24조제5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122호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 다음 각 호”를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체료 징수, 연체기간별 고정 연체요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 이를 조례에 단순히 확인·재기재하는 경우 법령 개폐시 동 조례의 개정이 동반되어 입법 경제에 부합하지 않음.
-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체요율을 하향 조정하여 개정(2022.4.20.)된 바 있으나, 조례 제5조 제3항은 개정 전 연체요율로 규정되어 있어 정비가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실효성 있고, 입법 경제에 부합하도록 상위법령을 적용함을 명시하는 것으로 조례 정비(제5조제3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123호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9명”을 “25명”으로 한다.

1. 의회 운영위원장
2. 의회 또는 국외교육연수 전문가 : 20명
3.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 4명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및 제3항,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의회 또는 국외교육연수 전문가 등의 심사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탄력적 회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심사위원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의회 또는 국외교육연수전문가 4명을 20명으로 확대함

나. 심사위원회 정수를 9명에서 25명으로 함

다. 심사위원회 회의를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규정과 시행일 등을 조정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9124호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의회 소속 공무원이 서울특별시의원의 국외활동 지원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회의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의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내실있는 국외출장 운영을 위해 중복되는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받지 않도록 함.

2. 주요내용

의회 소속 공무원이 서울특별시의원의 국외활동 지원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회의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의 심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9125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 중 “훼손가능성”을 “훼손가능성 여부 및 생태면적률 계획의 적정성”으로 한다.

제55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동주택·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다중생활시설(그 밖의 용도와 함께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의 용적률은 250퍼센트로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공공시설등 제공 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400퍼센트까지 할 수 있다.

제55조제4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 가의 허가기준란 및 제2호 가의 허가기준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5조제4항은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청(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건축신고를 접수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별지>

별표 1 개발행위허가 기준(제24조 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 가 기 준
가. 공통분야	(1) 조수류, 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을 것 (2) 개발행위로 인하여 해당 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 훼손되지 아니하고, 국방상 목적 등에 따른 원형 보전의 필요성이 없을 것 (3)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 경사도, 임상, 인근 도로의 높이, 물의 배수 등을 참작하여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준의 적용은 일필지 단위로 함. 다만,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라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지목이 “대” 인 토지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ha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산림청장이 가장 최근 고시한 산림기본통계를 말한다) 상 서울특별시 ha당 평균입목축적의 30%(녹지지역에서는 20%) 미만인 토지. (나) 평균경사도 18도(녹지지역에서는 12도) 미만인 토지. 다만, 일필지 내에 격자(10m×10m)가 1개 이상일 경우(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허가신고를 받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 격자별 산출된 평균경사도 중 최댓값을 적용한다. (4) 제4조제4항의 도시생태현황 조사결과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으로 지정된 부분은 보전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라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지목이 “대” 인 토지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 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오톱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비오톱”이란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루어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생물서식지를 말한다. (나) 비오톱유형평가는 5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서식지기능, 생물서식의 잠재성, 식물의 층위구조, 면적 및 희귀도를 종합하여 평가한다. (다) 개별비오톱평가는 자연형 비오톱유형과 근자연형 비오톱유형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3개의 등급으로 구분하며 자연성, 생물서식지기능, 면적, 위치 등을 평가항목으로 고려한다.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 가 기 준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1)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과 법 및 영 그리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그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법」에 따른다. 이 경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와 동시에 할 수 있다. (2)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를 대신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를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행하는 1천 20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 창고 등 상수도나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공간계획 대상 면적 중 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인 생태면적률을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대상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제외) 30% 이상, 그 이외 용도의 건축물 20% 이상 (나) 녹지지역 내 건축물 50% 이상 (다) (가) 및 (나)에도 불구하고 지형 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토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생태면적률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녹지지역 내 건축물 50% 이상 (나) 그 외 지역의 건축물 30% 이상
--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비오톱 지정에 따라 개발행위를 제한받는 토지에 대해,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 준공업지역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시설등을 제공하는 경우, 공동주택등의 용적률을 400퍼센트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에 적용되는 생태면적률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세부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도시관리계획의 생태면적률 계획 적정성 여부 검토 근거를 직접적으로 명시함 (제6조제2항제7호)
- 나. 생태면적률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적용 대상을 주택 용도 이외의 건축물까지 확대하고, 개발행위허가 비대상인 도시계획시설은 적용대상 항목에서 제외하며 제도 적용이 어려운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완화 가능하도록 함 (별표 1 제2호가목(3)(가)~(다))
- 다.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건축에 대해서는 지목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생태면적률을 확보하도록 의무규정을 부여함 (별표 1 제2호가목(4))
- 라.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의 용적률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공공시설등을 제공하는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400퍼센트까지 할 수 있도록 함. 단, 조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제55조제4항제1호)
- 마.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지목이 “대” 인 토지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 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오톱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경우, 비오톱유형평가1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1등급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한 보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별표 1 제1호가목(4))

◆ 서울특별시조례 제9126호

서울특별시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3월 26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지원하여 서울특별시의 이미지 제고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의 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역광장”이란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 일원에 광장형태로 조성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다자간의 협력에 동참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련기관 협조) 시장은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한국철도공사, 관할 경찰서, 자치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이하 “관계기관 등”이라 한다)과의 업무 협조를 위하여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시민 참여를 위한 홍보 등) 시장은 서울역광장의 이미지 제고와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에 관한 시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대시민 홍보 및 인식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서울의 관문인 서울역광장은 ‘종교단체 전도 소음 및 노숙인들의 음주, 흡연’ 으로 인한 시민 불편 지속되고 있음. 또한, 최근 알코올중독 및 정신질환자의 강력 사건 발생이 우려되고 있음
- 이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역광장을 정의함(제2조)
- 나.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다. 관련기관 협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제4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127호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가목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란 기호 8)을 다음과 같이 한다.

-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 부지면적 10만㎡이상
 - 단, 부지면적 5만㎡이상일 경우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 2인 이상의 의견을 반영할 것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을 “부지면적 5만㎡ 이상” 에서 “10만㎡ 이상” 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심의기준을 부지면적 “10만㎡ 이상” 으로 완화하되, 부지면적이 5만㎡~10만㎡의 경우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 2인 이상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통전문가가 교통영향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수정함

2. 주요내용

- 가.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을 “10만㎡ 이상으로 하고 부지면적 5만㎡이상일 경우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 2인 이상의 의견을 반영할 것” 으로 변경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9128호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시장은 「교통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최근 「교통안전법」의 개정으로 단지내도로 범위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되는 통행로를 포함하면서 교통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됨.
- 이에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은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제4호제6항 신설)

◆서울특별시조례 제9129호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2024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소상공인의 날 등) ① 시장은 「소상공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소상공인의 날 및 소상공인 주관을 기념하기 위한 관련 행사,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상공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사업을 시행하는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제2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9. 소상공인 창업 및 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해 제6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거나 소상공인 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제2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소상공인의 제품·기술 가치의 향상을 위하여 작업 공정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등 작업장의 디지털화를 위한 시책

13. 소상공인 제품의 전시·홍보 지원을 위한 시책

③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에 있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의 날 및 소상공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관련 행사,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함(제5조2)

나.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해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거나 소상공인 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3항)

다. 소상공인의 제품·기술 가치의 향상을 위하여 작업 공정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등 작업장의 디지털화를 위한 시책을 규정함(제8조제2항제12호)

라. 소상공인 제품의 전시·홍보 지원을 위한 시책을 규정함(제8조제2항제13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9130호

서울특별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3월 26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에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도입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기업
 - 나.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3. “중소기업”이란 시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운영지침 마련과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
 2.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중점관리목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한 중점관리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활동
2. 건전한 거버넌스 확립과 사회적 책임 추진 및 관리체계 구축
3. 준법·투명·윤리경영 추진과 공정한 조직 운영체계 구축
4.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노동·생활환경 유지
5. 기후위기 변화 대응
6. 환경오염 예방 및 환경규제에 호응하는 우수기술기업의 육성
7. 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하여 자원의 선순환 실현
8. 노동권 보장과 노동조건의 향상
9.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구축
10.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 제공
11.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에 대한 기여
12. 시민적 권리로써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실현
13.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순환경제로의 공헌
14.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 실현과 공공성 강화

제7조(공공기관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 등) ① 공공기관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
2.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3.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고려한 시책의 평가
4.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발간

② 시장은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는 경우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한 평가지표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과 중점관리목표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홍보 및 교육
2.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우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발굴 및 홍보
5.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6. 그 밖에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 중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객관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에 자료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인센티브 등) 시장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 우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수 기관 인증 부여, 표창 및 지원사업 우선 적용 등을 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와 관련한 민·관 협력기구로서 서울특별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산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에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구환경 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

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한 중점관리목표를 규정함(제6조)

다.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이행노력의무를 규정함(제7조)

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지원 가능한 사업의 범위를 규정함(제8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131호

서울특별시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3월 26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성균관,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형·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발전시키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한 종합계획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에 관한 사항
2. 연차별 사업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연차별 주요 사업계획 및 사업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시장은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성균관·향교·서원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발전 사업
2. 성균관·향교·서원의 문화체험·관광, 문화강좌 및 행사 사업
3. 성균관·향교·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예절 관련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성균관·향교·서

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3조제2항에 따른 장기적인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4조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사업의 발굴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와 관련된 법인·단체의 대표자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
2. 서울특별시의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 관련 법인·단체의 대표자
4.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활동가
5.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 관련 분야의 교수 등 전문가
6. 서울특별시 지역주민 대표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협의체의 운영)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시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시장 및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장소·안건 등을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자문사항을 의결한다.

④ 협의체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자문내용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협의체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을 따른다.

제10조(수당 등)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종로구 성균관, 강서구 양천향교 및 도봉구 도봉서원이 가진 유형·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발전시키고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사업 추진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3조 및 제5조)
- 나. 법령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 다.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제10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132호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를 제1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22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2023. 7. 18.)에 따라 시설 이용료 면제 대상을 추가하고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법적체계 정합성을 확보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접근성을 개선하며 이를 통하여 시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람료 면제 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함(제5조제1항제17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9133호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7호를 제1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6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2023. 7. 18.)에 따라 시설 이용료 면제 대상을 추가하고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법적체계 정합성을 확보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접근성을 개선하며 이를 통하여 시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람료 면제 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함(제9조제1항제17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9134호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민은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⑤ 시민은 시장이 시내버스 안전을 위하여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그 밖의 행동을 금지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최근 버스 안에서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일부 승객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이 드는 행동을 함으로써 버스 이용에 불편과 불안은 초래하고 있음.
- 버스 이용과 관련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철도안전법과는 다르게 운전자나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아 시민 안전에 대한 공백이 생기고 있음.
-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관련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여 버스 운전사와 시민분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민의 권리와 의무 조항에 시내버스 안에서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함(제10조의2제4항)
- 나. 시장이 안전을 위하여 그 밖의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동을 금지할 경우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제10조의2제5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135호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민은 마을버스 안에서 운전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⑤ 시민은 시장이 마을버스 안전을 위하여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그 밖의 행동을 금지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최근 버스 안에서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일부 승객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이 드는 행동을 함으로써 버스 이용에 불편과 불안은 초래하고 있음.
- 버스 이용과 관련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철도안전법과는 다르게 운전자나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아 시민 안전에 대한 공백이 생기고 있음.
-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관련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여 버스 운전사와 시민분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민의 권리와 의무 조항에 마을버스 안에서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함(제11조의2제4항)
- 나. 시장이 안전을 위하여 그 밖의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동을 금지할 경우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제11조의2제5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136호

서울특별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시장장학금·복지장학금”을 “시장장학·서울장학 I·서울장학II”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장장학금”을 “시장장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급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복지장학금”을 “서울장학II”로, “곤란한 자로 하되, 그 지급인원은 시장이”를 “곤란한 자(국가장학금 지원구간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경우)로”로 한다.

② 서울장학 I의 지급대상은 대학교의 신입생 중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자로서 고등학교졸업자격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를 포함한다) 경제적인 사정이 곤란한 자(국가장학금 지원구간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경우)로 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선발방법”을 “선발방법 및 지급 인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장학과 서울장학II은 등록금(수업료)으로 한다.

② 서울장학 I은 학업장려금(수업료를 제외한 학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정 부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더 많은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 종류 및 기준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장학금 지원을 통해 서울지역 출신 학생 및 대학 모두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학금의 종류를 시장장학, 서울장학 I, 서울장학II로 규정함(제2조)

나. 서울장학I을 신설하여 대학교 신입생 중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제적인 사정이 곤란한 자(국가장학금 지원구간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로 정하며, 서울장학II 는 기존 복지장학금과 동일한 대상에게 지급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의 기준을 서울장학I과 동일하게 규정함(제3조제2항, 제3항)

다. 장학생의 선발방법 및 지급인원을 대학교의 장학생 선발 규정에 의해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함(제4조)

라. 장학금 수혜내용은 서울장학I은 학업장려금으로 수업료를 제외한 학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정 부분으로 하고, 시장장학과 서울장학II 는 기존 과 동일하게 등록금(수업료)으로 규정함(제5조제1항, 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137호**

서울특별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3월 26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해 필요한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의 경비
2. 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협의회 운영 및 행사·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 신청 및 정산 등)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 외의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사람 또는 기관·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바르게살기운동'과 관련한 용어 뜻(제2조)
- 나.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범위(제3조)
- 다. 지도 및 감독에 관한 내용(제4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138호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영상제의 지원)” 을 “(영상제 등에 대한 지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상제” 를 “영상제, 영상산업 관련 시상식 및 부대행사”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영상제” 를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영상제, 영상산업 관련 시상식 및 부대행사” 로 하고, “영상 관련 조직위원회” 를 “해당 행사의 조직위원회”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는 영상문화의 확산과 영상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영상산업 관련 행사를 ‘영상제’ 로 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칸 영화제, 베를린 국제영화제, 베니스 영화제 등 해외 유수의 영화제는 영화제 활성화를 위해 시상식도 함께 진행하고 있고, 아카데미 시상식 등과 같이 영화상영 행사 없이 시상식으로만 이루어진 영상산업 관련 행사도 존재함.
- 따라서 기존의 영상제 뿐만 아니라 영상산업 관련 시상식과 부대행사도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영상산업 분야에 대한 보다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이 영상문화의 확산과 영상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영상제 뿐만 아니라 영상산업 관련 시상식과 영상제, 시상식의 부대행사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제6조제1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139호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울도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서울도심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 확보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서울도심”이라 함은 한양도성과 그 일부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구역을 말한다.
2. “도심부”라 함은 4대문안 범역인 퇴계로·다산로·왕산로·율곡로·사직로·통일로를 경계로 하여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서울도심 기본계획에서 정한 범역을 말한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8조까지로 하고,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서울도심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도심의 정비·관리사업을 지원하여야 하며, 서울도심의 경쟁력 확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중전의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서울도심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서울도심의 보전·관리·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울도심 기본계획(이하 ‘서울도심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제1항의 서울도심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서울특별시도시기본계획과 부합하여야 한다.

1. 서울도심 변화 분석 및 진단
 2. 서울도심 관리의 기본 방향
 3. 역사, 보행, 주거, 산업, 환경, 녹지 등 분야별 계획
 4. 공간관리계획
 5. 지역별 관리 지침
 6. 집행 계획
 7.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
는 한, 서울도심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2.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3.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5. 그 밖의 각 분야별 주요사업의 기본계획
- ④ 시장은 제1항의 서울도심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특성에 따라 권역을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
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제1항의 서울도심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할 수 있다.
- ⑥ 시장은 서울도심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정비할 경우에 공청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⑦ 시장은 서울도심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정비한 경우 서울특별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일간신문 및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고한다.

제6조(중전의 제4조)의 제목 “(역사도심 기본계획사업)”을 “(서울도심 기본계획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호 중 “역사도심”을 각각 “서울도심”으로 한
다.

제7조(중전의 제5조) 중 “역사도심”을 “서울도심”으로 한다.

제8조(중전의 제6조) 중 “역사도심”을 “서울도심”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울특별시 서울도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서울도심 내 지구
단위계획구역으로서 한옥 등 건축자산, 옛길, 옛 물길 등 역사·문화자원의 보전을 목적으

로 지정한 지역

제3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정비구역·재정비촉진지구 및 서울도심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해당 구역 안의 건축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나. 정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다.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라. 서울도심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서울특별시 서울도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서울도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양도성과 그 일부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서울도심 등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중 소단위 및 보전 정비형의 건폐율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 제84조제1항의 범위안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정할 수 있다.

제55조제1항제7호부터 제 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13항 중 “역사도심내”를 “서울도심내”로 하며, 같은 조 제17항 중 “역사도심”을 “서울도심”으로 한다.

7. 중심상업지역 : 1천퍼센트(단, 서울도심 : 80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 : 800퍼센트(단, 서울도심 : 60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 : 600퍼센트(단, 서울도심 : 50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 : 600퍼센트(단, 서울도심 : 500퍼센트)

제68조의2제4호 중 “역사도심”을 “서울도심”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역사도심”을 “서울도심”으로 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 도심의 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와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이에 서울 도심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2040 도시기본계획,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 연관 계획과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명칭 및 용어 개정(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 나. 조례 목적 개정(제1조)
- 다. 도심부를 정의 함(제2조제2호 신설)
- 라. 서울도심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 따르도록 함(제3조 신설)
- 마. 시장은 서울도심의 정비·관리사업 지원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함(제4조 신설)
- 바. 서울도심 기본계획에 분야별 계획 중 녹지를 포함하도록 개정(제5조제2항제3호)
- 사.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대하여 서울도심 기본계획을 반영하도록 개정(제5조제3항제2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9140호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가로등”이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에 시설된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해 해당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

제7조제1호가목 단서 중 “생장속도”를 “생장속도, 가로등의 위치”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도로표지”를 “가로등 및 도로표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도로표지 등의 안전시설물을 가리는”을 “가로등 및 도로표지 등의 안전시설물의 기능을 저해하는”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신호등”을 “신호등, 가로등”으로, “안전 등”을 “안전, 빗가림 방지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로수로 인해 가로등 불빛이 가려 어두운 도로환경을 개선하고자 가로등 주변 가로수의 식재 기준 및 가지치기 등의 사항을 개정하여 야간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야간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로등의 정의를 신설함(제3조9호)

나. 가로수의 식재 기준 중 ‘가로등의 위치’ 를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하도록 규정함(제7조)

다. 도로표지 등의 안전시설물을 가리는 가로수는 즉시 가지치기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제8조)

라. 가로수로 인한 가로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물에 대한 빗가림 방지를 위해 가지치기를 하도록 규정함(제11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141호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운전면허 자진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3. “스마트 정보교육”이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자료 또는 정보 이용의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교통 이용관련 스마트 정보교육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와 대책을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지원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2.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전문교육·조사·연구기관 등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중전의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민간위탁 할 경우 그에 따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현시점에서 교통사고 위험 및 보행자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고령운전자의 대중교통 이용 등 교통과 관련한 스마트 정보교육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적극 유도하고자 함
- 고령운전자 관련 실태조사의 결과와 대책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실태조사의 후속 조치를 명시하여 정책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조항을 신설하여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등을 유도하고자 함
- 그 외,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도모하고자 민간위탁에 대한 조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가. 운전면허 자진반납 및 스마트 정보교육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함 (제2조제2호 및 제3호)
- 나. 대중교통 이용 대책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신설함 (제3조제2항)
- 다. 교통 이용관련 스마트 정보교육 지원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제4조제1항)
- 라. 실태조사 보고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 (제5조제3항)
- 마.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에 대해 신설함 (제6조)
- 바. 고령운전자 대상 교육 시 민간위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 (제7조제3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142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체육시설 이용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시장은 체육시설 이용권등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체육시설 예약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중전의 제2호) 중 “공공행사”를 “체육경기, 공공행사”로 한다.

제2장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명칭사용권) ① 시장은 기업이 사용료를 지불하고 체육시설의 명칭에 기업의 명칭이나 브랜드 등을 일정 기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명칭사용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치적·종교적 편향성을 띠어 공공성이 현저히 저해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시장으로 하여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체육시설 예약 및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방지하도록 하여 공정한 공공서비스 사용을 유도하고자 함.
- 시립체육시설에서 개최되는 체육경기에서 관람권을 발행할 경우 관람권 수입액의 10%를 관람권사용료로 징수하였던 것을 공공·문화예술행사와 동일한 수준인 8%로 하향하여 체육시설에서의 본래 사용목적인 체육행사 개최를 장려하고자 함.
- 기업으로부터 일정 사용료를 받고 시립체육시설의 명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명칭사용권의 활용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시 세수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이 체육시설의 부정예약 및 이용권등의 부정판매를 방지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함(제4조의3)
- 나. 시립체육시설에서 개최되는 체육경기의 관람권사용료를 조정함(제8조제2항제1호)
- 다. 시립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명칭사용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함(제15조의2)

◆ 서울특별시조례 제9143호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투명성 제고를” 을 “투명성을 높이기” 로 한다.

제11조제5항 중 “CNG 용기” 를 “차량의 연료용기 또는 전기배터리”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서울시 시내버스는 CNG(압축천연가스) 버스로 운영되었으나, 최근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평가받는 수소버스, 전기버스로 교체하고 있는바, 안전 점검시 연료용기(CNG, 수소), 전기 배터리를 추가하여 안전한 버스 운행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전기, 수소버스 차량 도입을 반영하여 안전점검에 차량별 연료용기, 전기배터리 부분 보완하여 반영
나. 기타 문구 수정

◆ 서울특별시조례 제9144호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요되는” 을 “필요한” 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투명성 제고를” 을 “투명성을 높이기” 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CNG 용기” 를 “차량의 연료용기 또는 전기배터리”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시내 마을버스 대부분은 CNG(압축천연가스) 버스로 운영되었으나, 최근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평가받는 전기버스로 교체하고 있는 바, 전기 배터리 점검을 추가하여 안전한 버스 운행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전기버스 차량 도입을 반영하여 안전점검시 전기배터리 점검사항 추가
- 나. 기타 문구 수정

◆ 서울특별시조례 제9145호

서울특별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신기술기반사업” 을 “신기술기반사업, 인공지능사업” 으로 한다.

제7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신기술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시책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초거대 생성형 인공지능 Chat GPT, 자율주행, AI 안전진단 등 인공지능(AI) 기술은 서울시를 비롯한 사회·공공 분야의 미래전략을 위한 핵심기술로 활용되고 있으나 이를 위한 관련 조례의 공백이 있어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서울특별시 미래전략추진을 위한 인공지능사업의 계획 및 시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미래전략과제의 범위에 인공지능사업 신설 (제3조)
- 나. 미래전략과제 지원 사업에서 신기술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시책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사업 신설 (제7조제4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9146호

서울특별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3월 26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서울특별시 지부를 지원하여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발전시키고 국가안보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서울특별시지부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제3조(지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전한 안보관과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사업
2. 자유민주주의 시민 안보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시책 수립, 시행
3. 자유민주주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4.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통일기반 확충사업
5.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운영비 및 활동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포상)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서울특별시지부 활동을 통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현재 서울시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국자유총연맹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서울시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 근거는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별도 조례를 제정하여 명백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지원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한국자유총연맹 서울특별시지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국가안보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 나. 한국자유총연맹을 한국자유총연맹 서울특별시지부와 그 하부조직으로 정의함(제2조)
- 다.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및 공유재산 대부 등에 관하여 규정함(제3조, 제4조)
- 라.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서울특별시지부 활동을 통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함(제5조)
- 마.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함(제6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147호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소상공인연합회”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3.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이하 “지회”라 한다)란 소상공인연합회 서울특별시지회와 그 산하조직인 지역연합회를 말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지원”을 “보호 및 지원”으로 한다.

제1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5(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관할 구역에 있는 지회가 같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 있는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범위에서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를 법정단체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의와 소상공인 연합회 지회의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명에 “지원” 을 “보호 및 지원” 으로 정비함(제명)
- 나. 소상공인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지회를 정의함(제2조)
- 다. “지원” 을 “보호 및 지원” 으로 함(제7조의2제1항)
- 라. 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지원을 규정함(제10조의5)

◆ 서울특별시조례 제9148호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3월 26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림문화 및 산림휴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여가활동을 활성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문화”란 산림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정신적·물질적 산물의 총체로서 산림과 관련한 전통과 유산 및 생활양식 등과 산림을 활용하여 보고, 즐기고, 체험하고, 창작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산림휴양”이란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신의 휴식 및 치유 등을 말한다.
3. “자연휴양림”이란 시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휴양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산림치유”란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5. “산림치유지도사”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조의3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고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치유의 숲”이란 산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림문화·휴양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산림문화·휴양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산림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산림문화·휴양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역계획은 산림문화, 산림휴양, 산림치유 및 산림레포츠 등 부문별로 수립할 수 있다.

③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문화·휴양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산림문화·휴양 자원 현황
3. 산림문화·휴양 자원관리 및 활용방안
4. 산림문화·휴양 시설 안전관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문화·휴양자원의 현황과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시장은 산림문화·휴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림문화·휴양 관련 조사 및 연구
 2. 산림문화·휴양 시설 조성 및 정비
 3. 산림문화·휴양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4. 산림문화·휴양 관련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산림문화·휴양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 등) ① 자연휴양림을 관리하는 자는 재난·사고 예방 및 재난·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용자 보호 등의 조치를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자연휴양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연휴양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연휴양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안전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7조의2에 따른다.

제8조(자연휴양림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자연휴양림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행위 및 흡연행위
2.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3. 자연휴양림에 설치된 시설을 관리인의 허락 없이 이동·반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4.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5.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6.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상행위
7.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텐트나 자동차 등을 이용한 야영 행위

제9조(자연휴양림의 위탁) 시장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조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영 제10조에 따른 법인·단체 등에 자연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 등) 시장은 시민이 치유의 숲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산림치유지도사를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산림문화·휴양자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 자치구 및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과태료) ① 법 제3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16조 별표 4와 같다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림문화 및 산림휴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여가활동을 활성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림문화·휴양 지역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나. 산림문화·휴양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다.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라. 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

마.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1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149호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도시녹화”라 함은”을 “도시녹화”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이라 함은”을 각각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이라 함은 「도시」”을 “이란 「도시」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단일토지”라 함은”을 “단일토지”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나무은행”이라 함은”을 “나무나눔”이란”으로, “인하여 수목의 이식이 불가피한 경우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을 “발생하는 수목을 재활용하기 위한”으로 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계약기간”을 “녹지활용계약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21조 중 “계약기간”을 “녹지활용계약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나무은행)”을 “(나무나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각 녹지관리청에 설치된 나무은행을 활용”을 “시장은 녹화사업에 제공”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재활용 수목의 이식을 위하여 이식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제3항 중 “위촉장을 수여하여”를 “협약을 체결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드는 비용”을 “필요한 물품”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도시내에서 발생하는 이식수목, 기증수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하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 또한, 도시녹지의 시민참여 관리를 위해 협약체결, 물품 지원 등에 대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나무은행에 주택재건축, 재개발, 각종 정비사업시 이식된 수목을 녹지관리청은 녹화사업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식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35조제1항 및 제2항)
- 나. 개인, 회사, 단체, 법인이 참여하는 녹지의 실명관리시 협약을 체결하여 실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36조제3항)
- 다. 녹지를 실명으로 관리하는 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36조제4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150호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학교, 대학 등의 기관과 도시형소공인 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업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도시형소공인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제공 및 지원을 위하여 도시형소공인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23년도 의원연구단체에서 진행한 서울의 봉제산업 활성화와 소상공업 발전방안 연구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영세한 소규모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도시형소공인 업종에 신규 인력의 유입을 통한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학교·대학 등 기관과 도시소공인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의 내용을 명문화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도시형소공인 양성을 위한 내용에 학교, 대학 등 기관과 도시소공인 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대한 내용을 추가함(제5조제2항의 제6호 신설)
- 나. 시장이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경영 활성화를 위해 정보제공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7조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9151호**

서울특별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3월 26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서울특별시의회를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4. “피해자 등”이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5. “신고자”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를 위한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원이 괴롭힘 행위를 행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알게 된 경우 이를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에 관련되어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

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자와 피해 직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상담원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의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상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의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와 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의 피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한다.

제10조(신고자 등의 보호) 의장은 신고자 및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허위신고에 대하여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 또는 조사(이하 이 조에서 “상담 등”이라 한다)하는 사람, 상담 등의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상담 등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상담 등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담 등의 내용을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직원은 기존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어, 시의회 직원을 대상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안전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장 내 괴롭힘”, “직장”, “직원” 등 용어를 정의함(제2조)

나. 의장의 책무를 명시함(제3조)

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며 이에 대한 상담과 예방교육을 진행토록함(제6조, 제7조)

라.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 시 의장이 해야하는 조치 및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명시함(제8조 ~ 제10조)

마.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인원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금함(제11조)

바. 괴롭힘의 내용에 대해 알게 된 사람들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도록 함(제13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152호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세운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세운초록띠광장”을 “세운광장”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세운광장”이란 종로구 장사동 2-1 일대 광장형태로 조성된 장소를 말하며, 해당구역 지상의 부대 시설물 전체를 의미한다.
2. “사용”이란 세운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세운초록띠광장의 명칭이 2014년 다시세운광장으로 재편되었으며, 현재는 ‘세운광장’ 으로 통상적 명칭사용이 이루어지고 있어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세운초록띠광장’ 을 ‘세운광장’ 으로 현행화하고, 주소를 정비함(제1조, 제2조제1호, 제2호)

[별지 서식]

세운광장 사용허가신청서(제5조 관련)

행 사 명 칭				
사 용 목 적				
사 용 일 시		년 월 일(요일) 시 분 ~ 시 분 (시간 분)		
주최자 또는 주최 단체의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FAX	()
	성 명 (단 체 명)		생년월일	
			직 업	
연락 책임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
	성 명 (단 체 명)		생년월일	
			직 업	
사 용 인 원			사용면적	m ²
행 사 내 용				
서울특별시 세운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구비서류 1. 행사계획서(사용장비, 시간계획 등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 2. 사용 위치도(현장답사 후 평면도 표시) 3. 시설물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무대, 천막, 현수막, 의자 등 기타 시설물 설치시)				

◆ 서울특별시조례 제9153호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매점 등의 계약 우선순위(제5조관련) 하단에 아래 항목을 신설한다.

※ 동일 순위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 유발요인 검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로 인해 [별지] 하단에 우선순위가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정한다는 사항을 기입하도록 함.

2. 주요내용

- 가. 동일 순위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하도록 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9154호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
2.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전역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역 특수성에 따른 구체적인 운영범위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개정에 따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구체적인 운영범위에 대해 명시하여,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를 명시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9155호

서울특별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3월 26일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와 협력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평화통일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조 (재정 지원) 시장은 지역회의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정책의 자문 및 건의
2.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 및 수렴
3.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 의 지지기반 확충
4.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5.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공감대 확산
6. 그 밖에 지역사회 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역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와 지역회의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한다.

제5조 (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지역회의의 활동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시설의 이용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시장은 지역회의의 활동을 통해 지역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지역회의 자문위원에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정 목적에 대하여 규정함(제1조)
-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조)
- 다. 지역회의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 라. 시와 지역회의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 마. 지역회의의 공공시설 이용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 바. 지역회의 자문위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156호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하여 혼잡도가 높은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의 적정 운영용량을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혼잡도 완화 및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도시철도, 노선버스 등 주요 대중교통수단과 도시철도 역사, 버스전용차로, 정류소 등 주요 대중교통시설의 첨두시간 혼잡도가 매우 높아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이에 혼잡도가 높은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의 적정 운영용량을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적극적인 대중교통 혼잡도 완화 및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인근 지방자치단체, 운수업체 등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합의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혼잡도가 높은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의 적정 운영용량을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혼잡도 완화 및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제8조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157호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15일 범위 안” 을 “15일의 범위” 로 한다.

제14조제2항 단서 중 “범위 안” 을 “범위” 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 안” 을 각각 “범위” 로 한다.

제29조제6항부터 제16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7항) 중 “제6항” 을 “제7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중전의 제15항) 중 “제14항” 을 “제15항” 으로 한다.

⑥ 6세 이상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준비, 학교 적응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교육지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제32조 중 “범위 안” 을 “범위”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제도를 공공영역에서부터 실시하고 이러한 분위기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여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6세 이상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24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교육지도시간(특별휴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제29조제6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158호**

서울특별시 위기가구 지역사회 발굴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위기가구 지역사회 발굴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3월 26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인식을 고취시키고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사회보장”이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을 말한다.
4.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동 단위 인적안전망으로 구청장이 위촉한 통장 및 반장, 생활업종종사자, 신고의무자 등을 말한다.
5.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구 및 동 단위로 설치한 조직을 말한다.
6.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가구 발굴에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와 민관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위촉을 확대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효과적인 운영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사회 내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상호간의 협력이 가능하도록 지역사회의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위기가구 발굴의 활성화와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업
2.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에 관한 사업
4.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업
5. 지역사회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관한 홍보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민관협력체계) ① 시장과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은 관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를 발굴 및 지원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주민 위기가구 발견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시장 또는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우편·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7조(포상금) ① 시장은 위기가구로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의 지급금액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제8조(표창) 시장은 위기가구 발굴 등 민관협력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과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정보의 보호) 누구든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지역주민의 관심과 역할을 높여 위기가구의 고립을 예방하고 사회의 연결고리를 복원하여 이웃간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관한 포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기가구 발굴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목적 및 정의 규정(제1조,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제3조)
- 다. 지원사업 및 민관협력체계를 규정(제4조, 제5조)
- 라. 지역주민 위기가구 발굴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기준 규정(제6조, 제7조)
- 마. 지역주민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를 위한 표창기준 규정(제8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159호
서울특별시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2024년 3월 26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패션봉제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의 패션봉제산업을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패션봉제”란 재봉틀이나 손으로 바느질하여 의류, 양말, 액세서리, 생활용품 등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2. “패션봉제산업”이란 패션봉제 제품의 기획·제조·판매·정보·서비스 등의 각 단계에 속하거나 이를 체계화한 산업을 말한다.
3. “패션봉제업체”란 패션봉제 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또는 시에 사업장을 둔 패션봉제산업 사업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패션봉제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패션봉제산업의 육성 및 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패션봉제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패션봉제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패션봉제산업 관련 현황과 전망
2. 패션봉제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목표와 방향
3. 패션봉제 기술의 혁신과 첨단화 및 보급
4. 패션봉제산업 집적지 활성화
5. 패션봉제산업 지원사업
6. 패션봉제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와 정책 개선
7. 그 밖에 패션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④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패션봉제산업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패션봉제산업의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패션봉제산업의 지원) ① 시장은 패션봉제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패션봉제 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 교육 및 훈련
2. 패션봉제업체 생산품 판로개척 및 마케팅
3. 패션봉제 시제품 제작과 공용장비 이용
4. 패션봉제업체 기술 고도화와 작업설비 교체
5. 패션봉제업체의 경영능력과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한 상담 및 정보제공
6. 패션봉제업체 작업환경과 처우 개선
7. 패션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업 및 네트워크 구축

8. 그 밖에 시장이 패션봉제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창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조하거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패션봉제산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해 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패션봉제산업 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패션봉제산업 지원과 관련한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패션봉제산업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패션봉제산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그 밖에 패션봉제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패션봉제산업 관련 실·본부·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패션봉제산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그 밖에 자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시의회 의원은 위촉 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사무 총괄 및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

는 부서의 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사무관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패션봉제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패션봉제산업의 육성 및 지원 사무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2조(표창) 시장은 패션봉제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패션봉제업체 및 종사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서울시의 패션봉제 산업은 미래 성장동력으로 손꼽히는 뷰티패션 산업의 토대가 되며,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시형 제조업의 한 축을 이루고 있으나 가격경쟁력 저하, 신규 인력 유입의 단절 등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음.
- 이에 따라 패션봉제산업의 활성화와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패션봉제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지원 사업, 패션봉제산업 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한 조례안을 발의함.

2. 주요내용

- 가. 패션봉제산업 등 용어를 정의함(제2조)
- 나. 패션봉제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제5조)
- 다. 분야별 패션봉제산업 지원사업에 대해 보조할 수 있음(제7조)
- 라. 패션봉제산업 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함(제9조·제10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160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을 “사회복지시설을 공개모집으로 다시” 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1항” 을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며, 제1항” 으로 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하고, 제9조 및 제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임원의 해임명령)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에 따른 임원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의2(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해임명령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해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야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나 감사가 진행 중인 경우
 2. 해임명령 기간 중인 경우
 3. 임원이 해당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재산·보조금에 대하여 회계부정, 횡령 또는 절취를 하거나 그 업무 수행시의 뇌물수수 또는 배임(背任) 행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수사 및 기소 중인 경우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직무집행 정지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특정 법인 및 단체 등에게 과점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 위탁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이를 방지하고 민간위탁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아울러, 사회복지시설의 임원에 대한 해임명령 및 직무집행 정지를 규정하여 복지시설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재위탁”의 정의를 정비함 (제2조)
- 나.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에 수탁자의 수행 능력의 기준을 규정함(제7조)
- 다. 수탁기관의 임원의 관리능력 및 공신력 강화를 위한 해임명령 및 직무집행정지를 규정함 (제9조, 제9조의2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9161호

서울특별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3월 26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를 진흥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시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인문정신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자발적인 참여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자료 발굴·수집·보존 사업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콘텐츠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리
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4. 그 밖에 시장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인문교육의 실시 등)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기관에서 인문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부,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

제8조(지원)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포상)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공헌을 한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우리 사회의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정신문화와 공동체 의식은 오히려 약화되고 있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통하여 균형 잡힌 시각과 인문학적 소양을 높여 시민의 행복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인문 및 인문학의 용어를 정의함(제2조)
- 나.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 수립 사항을 규정함(제4조)
- 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5조)
- 마. 사업 수행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제8조)
- 바. 공적이 있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162호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2024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시장은 자원봉사 실적이 뛰어난 자원봉사자를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하여 인증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자원봉사자의 선정 및 인증카드 발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자원봉사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 주관 주요행사 참석 시 예우
 2. 누적 10,000시간 이상 우수자원봉사자 인증패 수여
 3. 선진 자원봉사 프로그램 연수
- ③ 시장은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자원봉사자를 선정하고 예우 및 지원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가. 우수봉사자 선정, 인증절차를 신설하고 예우 및 혜택사항 등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제10조의4)

◆ 서울특별시조례 제9163호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서울특별시장·서울특별시 교육감”을 “서울특별시의회의원·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서울특별시장”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한다.

1. “비용추계서”란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재정지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을 “의원·위원회·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1항”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시장과 교육감”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 제2항 중 “세출과 세입”을 “재정지출과 재정수입”으로,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제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를 “표시한다”로 하고, 제5조제8항을 삭제한다.

제6조 중 “시장과 교육감” 을 “시장” 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발의하는” 을 “발의 및 제안하는” 으로, “재정분석담당 부서” 를 “재정분석 담당관”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과 교육감” 을 “시장” 으로, “각각 서울특별시 조례규칙심의회 및 서울시교육청 법제심의회” 를 “서울특별시 조례·규칙심의회” 로 한다.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자료협조) 시장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의원·위원회가 발의 및 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2. 비용추계의 전제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지출	○						
	○						
	소계(a)						
수입	○						
	○						
	소계(b)						
□ 총 비용(a-b)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국비							
시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 등						
민간							
기타							
합계							

5. 덧붙이는 의견

6. 작성자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제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뒤 쪽)

작성요령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재정지출의 순증가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관련 법령 등의 해당 조문과 함께 명시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재정부담 주체별, 항목별 및 연도별로 요약하여 제시한다.
4. 재원조달 방안 : 지방세수입 ·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국고보조금 · 지방교부세(분권 · 특별) 등 의존재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5. 덧붙이는 의견 :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등을 제시할 수 있다.
6. 작성자 : 비용추계서를 작성한 부서명 또는 작성자의 이름과 그 연락처를 기재한다.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비용추계의 타당성을 가늠할 수 있도록 비용추계 항목별로 비용추계의 방법, 비용추계에 사용한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가 존재함에도 현행 조례에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기재되어 교육청 제출 의안이 여러 조례에 중복 적용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서식 교정 등을 통해 비용추계 정확성을 개선하고자 하며, 의원·위원회에게 의안 비용추계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 요청권을 부여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명칭을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나. 서울시 교육감이 제출하는 안건을 조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 다. 조례에 사용하는 '세출·세입'과 '재정지출·재정수입' 단어를, '재정지출'과 '재정수입'으로 일원화함
- 라. 의원 혹은 위원회가 의안의 비용추계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市에 요청할 때, 市는 적극 협조하도록 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9164호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및 제9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8. “시장정비사업”이란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전통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상업기반 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 점포가 포함된 건축물 건설을 위해 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9. “시장정비구역”이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3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승인·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시장정비사업의 대규모점포 등록에 관한 특례) 법 제44조의2제2호에 따른 매장면적 합계의 규모는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에서 시장정비구역 면적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종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시장정비구역 면적에 상관없이 대규모점포의 경우 3천제곱미터 이상 매장면적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어 소규모 시장의 정비사업 추진에 큰 걸림돌이 되었음.
- 이에 따라 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 내 소규모 시장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법 제44조의2(대규모점포의 등록에 관한 특례)가 신설되면서, 시장정비사업시행자에게 매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었음.
- 개정안은 법개정 취지와 상권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장면적 합계의 규모는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에서 시장정비구역 면적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기준을 설정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정비사업" 및 "시장정비구역"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제2조제8호 및 제9호)
- 나. 시장정비사업에서 대규모점포 등록 특례의 적용대상인 매장면적 합계 규모는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에서 시장정비구역 면적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함(제14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165호**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의 신청을 받거나 필요한 경우 시장이 직접”을 “법 제48조의3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관광객으로 인하여”를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로,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을 “생활환경을 해칠”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차량을 이용한 숙박·취사 등의 행위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다만, 다른 법령에서 출입, 주차, 취사 및 야영 등을 금지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 시장은 법 제48조의3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해당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특별관리지역의 위치, 면적
2. 특별관리지역 지정·변경·해제 일시
3. 특별관리지역 지정·변경·해제 사유
4. 특별관리지역 내 조치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법 제48조의3제6항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에 대하여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편의시설 설치, 이용수칙 고지, 이용료 징수, 차량 및 관광객 통행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게 법 제48조의3제7항 및 「지방자치법」 제34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구청장의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중 “업무능력”을 “업무능력 향상 및 지역의 문화와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장이 관광종사원 등의 지역문화와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 차량을 이용한 숙박·취사 등의 행위로 인해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특별관리지역 관련 규정 중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이 차량을 이용한 숙박·취사 등의 행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함(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나. 시장이 특별관리지역 내의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12조제4항)
- 다. 시장이 구청장의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함(제12조제5항)
- 라. 관광종사원 교육 지원 범위에 지역문화 및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성 교육을 추가 규정함(제13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166호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독서소외인”이란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진흥) 시장은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독서문화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별표 중 자료복사 및 출력료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자료복사 및 출력료

구분	용지규격	1매당 사용료(단면)
복사	A4(210mm×297mm)	50원
	B4(257mm×364mm)	70원
출력	A4(210mm×297mm)	50원
	B4(257mm×364mm)	70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비, 자료제작비 등 재원 지원 중심의 현행 규정에 독서문화 활동 기회 보장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의 독서문화 향유 기회를 보장하고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 시장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지식정보취약계층의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장의 조치 사항을 규정함
(제37조2 신설)

서울특별시교육청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24-147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교육감

1. 개정이유

- 국가정책사업*의 안정적 이행, 증가하는 행정서비스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
 - * 늘봄학교, 유보통합, 학교복합시설, 학생맞춤형통합지원 등
- 타 시·도교육청 직급별 정원책정기준과의 형평성 및 균형*을 고려하여 우리 교육청 6급 이하 정원책정기준 상향 조정
 -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 제1호
- 국정과제 ‘유보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과 단위 기구 설치에 따라 부서장 직급 배정을 위한 단위기관 내 직급 조정
- 증가하는 행정 수요(산업안전·보건·환경·급식 등)에 효율적 부응 및 통솔범위 적정화를 위해 보건안전진흥원 (가칭)총무부를 신설함에 따라 단위 기관 내 직급 조정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 (안 제3조 관련 별표 2)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문경력관
비 율	2% 이내	8% 이내	30% 이내	36% 이내	23.5% 이상	0.2% 이내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문경력관
비 율	2% 이내	8% 이내	33% 이내	40% 이내	16.5% 이상	0.2% 이내

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안 제4조 관련 별표 3)

- 일반직 정원 조정: 총계 변동 없음
 - 4급 정원 증원: 증 2명 (42명 → 44명)
 - 본청(직속기관 포함) 4급 정원 증원: 증 2명 (31명 → 33명)
 - 5급 이하 정원 감원: 감 2명 (7,042명 → 7,040명)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교육청 (담당부서: 행정관리담당관)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신문로 2가)

○ 연락처: 전화 02-2282-8644, FAX 02-6973-9921

○ 이메일: jeunsan@sen.go.kr

4.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붙임]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 문 경력관	연구직	
							연구관	연구사
비 율	2% 이내	8% 이내	33% 이내	40% 이내	16.5% 이상	0.2% 이내	0.03% 이내	0.27% 이상

2. 기능직공무원: 삭제

3. 연구직공무원: 삭제

4. 별정직공무원

구 분	4급상당	5급상당	6급상당 이하
비 율	15% 이내	55% 이내	30% 이상

5. 특정직공무원

구 분	장학관 · 교육연구관	장학사 · 교육연구사
비 율	30% 이내	70% 이상

[별표 3]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구 분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7,722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7,125				
23급	1		1		
3급	9		9		
34급	3		3		
4급	44		33	11	
45급	7		7		
5급 이하 소계	7,040				
전문경력관 소계	7				
연구사 소계	14				
별정직 계	8				
4급상당	1		1		
5급상당 이하 소계	7				
특정직 계	588				
4급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51		29	22	
5급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537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문 경력관	연구직	
							연구관	연구사
비율	2% 이내	8% 이내	30% 이내	36% 이내	23.5% 이상	0.2% 이내	0.03% 이내	0.27% 이상

2. 기능직공무원: 삭제

3. 연구직공무원: 삭제

4. 별정직공무원

구분	4급상당	5급상당	6급상당 이하
비율	15% 이내	55% 이내	30% 이상

5. 특정직공무원

구분	장학관·교육 연구관	장학사·교육 연구사
비율	30% 이내	70% 이상

개정안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문 경력관	연구직	
							연구관	연구사
비율	2% 이내	8% 이내	33% 이내	40% 이내	16.5% 이상	0.2% 이내	0.03% 이내	0.27% 이상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별표3]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구분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 학교
총계	7,722				
정무직계	1				
교육감	1		1		

[별표3]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구분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 학교
총계	7,722				
정무직계	1				
교육감	1		1		

현행						개정안					
구분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 학교	구분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 학교
일반직 계	7,125					일반직 계	7,125				
23급	1		1			23급	1		1		
3급	9		9			3급	9		9		
34급	3		3			34급	3		3		
4급	42		31	11		4급	44		33	11	
45급	7		7			45급	7		7		
5급 이하 소계	7,042					5급 이하 소계	7,040				
전문경력관 소계	7					전문경력관 소계	7				
연구사 소계	14					연구사 소계	14				
별정직 계	8					별정직 계	8				
4급상당	1		1			4급상당	1		1		
5급상당 이하 소계	7					5급상당 이하 소계	7				
특정직 계	588					특정직 계	588				
4급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51		29	22		4급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51		29	22	
5급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537					5급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537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견 제출

성 명 : (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 : 대표자 성 명 :
주 소 : 전화번호 :

개정안	수정요구안	사 유
제0조(00)	제0조(00)	○ -

2024년 월 일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